

보건복지부	보 도	. 참 그	2 ;	자 료	
배 포 일	2020. 11. 29. / (총 28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장박 원당당자	은 정 연 수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성 훈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송 원 담 당 자 유 3	은 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덕 희 문 갑 전	화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정 숙 성 경		044-202-1720 044-202-1721	
교육부 대입정책과	I : . T. I	훈 희 재 극		044-202-6368 044-202-6367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		재 술 권 홍		02-2110-3610 02-2110-36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지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 부처 및 지자체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 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Ⅰ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 현재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한 주(11.22.~11.2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00.1명**으로 그 전 주간(11.15.~11.21.)의 **255.6명**에 비해 **150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5.9명으로 그 전 주간 (11.15.~11.21.)의 67.4명에 비해 18.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1.1.~11.7.	11.8.~11.14.	11.15.~11.21.	11.22.~11.28.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88.7명	122.4명	255.6명	400.1명
60세 이상	25.9명	43.4명	67.4명	85.9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1.7명	28.1명	39.4명	24.4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16건	40건	41건	17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1.1%	15%	14.5% (300/2,065)	18.9% (561/2,97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61.7	58.1	46.9	40
즉시 가용 중환자실	137개 (11.7.9시기준)	131개 (11.14.9시기준)	113개 (11.21.9시기준)	86개 (11.28.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약 70%인 279.4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 생 친 구

- 더불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2.~11.2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79.4명	27.9명	31.1명	5.7명	35.9명	18.4명	1.7명
60대 이상	51.7명	10.1명	4.6명	1.7명	12.9명	4.6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1.28.9시기준)	41개	8개	2개	4개	19개	6개	6개

- 또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가 58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다.
 - 음식점과 주점, 에어로빅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위·중중환자는 11.29일 기준 76명이고, 중중환자 병상은 즉시 입원 가능한 여유 병상을 전국적으로 86개를 확보(11.28일 기준)하는 등 환자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 다만, 환자 수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 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며, 필요 시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으나,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 두기 효과가 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충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함께 **금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며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 최근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수도권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으며 전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2.5단계 기준의 초입까지 다다른 상태이다.











평생친구

- 지역적으로는 국내 발생 환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편차가 커 수도권은 2단계 기준을 초과 하였으나 호남권,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 등은 1.5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경북권, 제주 등은 아직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난 11월 24일(화)부터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수도권 외 권역의 경우, 호남권 및 강원도(영서 일부), 경상남도 등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권, 대구·경북권, 제주도 등은 1단계를 유지하며 기초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다.
- · 특히 대구·경북권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명, 제주도는 1.7명으로 1.5단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23~11.29)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간 하루 평균	416.0	285.7	32.0	32.6	6.6	38.0	19.4	1.7
1.5단계 기준	-	100	30	30	30	30	10	10
2단계 기준	300	200	60	60	60	60	20	20

- □ 주요 보조지표인 **환자 발생 연령대**에 있어서는 청·장년층 중심 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인 고령충 환자 비율은 20%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참고로, 고령충 환자 비율은 40%를 초과하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위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러한 연령 구성으로 인해 고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8월 유행에 비해 중환자 발생 등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환자 발생 규모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 이에 따라 위·중중환자는 11월 29일 기준 76명으로, 지난 열흘간 큰 폭의 증가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환자 발생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위·중중환자 수는 계속 중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 60대 이상 환자 비율 및 위중증 환자 수 >

구	분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확진제	구 수	222	230	313	343	363	386	330	271	349	382	581	555	503	450
60세	수	72	64	82	72	84	66	61	46	75	80	109	121	128	85
이상	%	32.4	27.8	26.2	21.0	23.1	17.1	18.5	17.0	21.5	20.9	18.8	21.8	25.4	18.9
위중	증	55	60	67	79	84	86	87	79	79	81	78	77	77	76

- □ 의료체계는 **그동안 확충한 중중환자 전담 병상** 등으로 인해 현재 까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증환자 병상**은 즉시 입원 가능한 여유 병상을 **전국적으로 86개를** 보유(11.28 기준)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50% 내외이다.

< 가용병상 현황(11.28 기준) >

	輕症				中等症		危重症			
구분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보유	입소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	
전국	3,478	2,009	1,469	4,479	2,514	1,965	548	354	86	
수도권	2,852	1,744	1108	2,125	1,337	788	333	224	41	
강원	40	26	14	221	108	113	16	8	6	
충청권	502	196	306	435	240	195	39	24	8	
호남권	84	43	41	538	353	185	26	19	2	
경북권	-	-	-	402	103	299	49	32	4	
경남권	-	-	-	575	353	222	71	39	19	
제주	-	-	-	183	20	163	14	8	6	

- * 가용병상은 인력·장비 등이 완비되어 확진자가 당일 입원 가능한 병상
- 그러나, 권역별로 치료 여력의 편차가 있고 현재와 같은 환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여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 **중증환자 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여유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으며,
- 경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으로, 지난 주에 호남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서울시·경기도 자체 생활치료센터 등 3개소를 개소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 □ 한편, 기존에 조치하였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8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10일~2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 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전망으로, 그 이후부터 환자 중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 □ 이와 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대웅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첫째,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특히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 둘째, 특히 현재 유행이 **젊은 충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의 상향보다 현재의 거리 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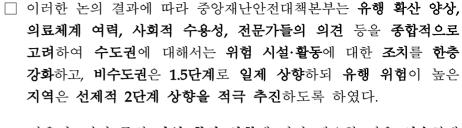






미흡한 젊은 충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의 위기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셋째,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고, 2단계 조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 특히 2단계 조치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만 60~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다.
-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의 유행 상황과 거리 두기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급격한 유행 확산 추이가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 해야 하며,
 -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러한 방향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몇 차례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과정이 실시되었다.



- 아울러,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 □ 먼저,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한다.
-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가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 □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시행한다.
 - *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 □ 1.5단계와 2단계의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참고1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참고1) >

구분	1.5단계	2단계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m'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중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환자 발생이 큰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중가하는 추이가 유지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주중에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치며 **상황을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연말 연시의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하기 위한 별도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추적・검사와 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방역·의료체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하여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에 국민들께서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중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평생친구

3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확진자·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능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험장 방역지침 수립, ▲시험장 및 관리·감독 인력 확보, ▲고교 원격수업 전환 등 수험생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일반시험장 1,239개 외에도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 별도시험장 113개를 마련**하여 확진·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 또한, 수능 하루 전날인 12월 2일에는 특별 상황관리를 실시하여,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험 전까지 확진· 격리 수험생을 분리 및 배정 조치할 계획이다.
- 먼저, 확진·격리 수험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확진· 격리 사실을 최초 통보할 때 수능 지원자 여부를 확인**한다.
- 만일 확진·격리자가 수능 지원자인 경우에는 확인한 수험생명단을 "관할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며, 이 중 확진자는 "시도 병상배정팀"에도 함께 통보한다.
- 시도교육청은 보건소가 통보한 내용을 공동상황반에 보고하는 한편,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도 병상배정팀과 시험장 배정을 협의하고, 격리 수험생인 경우에는 시도 격리담당팀과 이동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 또한, 확진·격리자인 수험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의 전체 확진·격리자 명단과 수능 지원자 명단을 대조하여 수험생 정보를 확인하고, 보건소를 통해 보고된 확진· 격리 수험생 명단과 교차점검도 진행한다.
- 신속한 진단검사 결과 확보를 위해 **수험생 진료는 보건소,**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단일화한다.
 - 보건소는 검사 대상자가 **수험생인 경우 검체를 우선적으로 채취** 하고, 수험생임을 표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즉시 이송**하다.
 - 보전환경연구원은 **수험생의 검체를 우선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공동상황반"에 통보한다. 만일, 12월 2일 24시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험생 명단을 "공동상황반"에 알리고, 계속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공동상황반은 진단검사 결과 **수험생이 확진자로 확인되면, 명단을** "시도 병상배정팀" 및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병상 배정팀과 관할 시도교육청은 시험장 배정을 협의하고 해당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즉시 이송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12월 2일 수능 특별 상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병상배정 및 격리담당 부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장 준비, 방역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도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거리 두기 등 감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평생친구

4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진행하였다.
- 신입 수용자는 감염 연관성 여부 문진 및 발열 ·호흡기 중상 유무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KF80 보건마스크 지급, 14일간 격리수용, 1일 2회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중상 발현 확인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 기존 수용자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 민원인, 변호인, 기관 운영 관련 **외부인 등의 교정시설 출입을 최소화**하고, 출입 외부인은 **내·외부 정문에서 2단계 체온 측정** 및 내부정문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직원의 경우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중점관리시설 원칙적 출입 금지 ▲일반관리시설 최대한 출입 자제 ▲기타외부 활동 최대한 자제 등 외부 활동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다.
- □ 다만 최근 교도소 수용자가 코로나19에 잇달아 감염되는 등 교정 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존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보안상 이유로 면 마스크의 구입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에서 외부인이 보안 구역 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복도 착용하도록 한다.
- **직원**의 경우 확진자접촉,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약간의 감염 의심만 있더라도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하도록 독려한다.
 - 또한,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은 금지한다. 단 직계존 비속의 결혼식·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도록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하고,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코로나19 교정시설 **방역 세부지침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 기존에 실시 중인 소속기관의 자체점검, 지방교정청의 소속기관 점검과 함께 법무부 교정본부가 노인수용자 전담시설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를 보완하여 교정시설 내 확진자 수에 따라 별도 격리시설 운영 등 격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중증도별 치료·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인력과 방역물품에 대한 지워도 확대할 예정이다.





평생친구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중랑구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의 2단계 지침에 추가하여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 또한,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구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11월 25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1천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 확진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에 22실(1인 1실)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시험장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
 -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별도시험장에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하며, 자차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 공무워을 배정하여 격리자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2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604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85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18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636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57명이 입소(47.4%)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2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11월 2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1160개소, ▲이·미용업 2,047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4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평생친구

- < 붙임 > 1.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2.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4.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첩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다중이용시설

	. =1 =11	=1=0	_ =1 =11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연	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목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등)	▲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춤추기 금지, 좌석</u> 간 이동 금지 추가	▲ <u>집합금지</u>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m³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u>인원 제한 강화</u> ▲ 노래·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m'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음식 섭취 금지 추가</u>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 <u>스탠딩금지, 좌석간</u> 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	▲150m'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 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u>수칙은 1단계와 동일,</u>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식당)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추가 ▲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결혼식장		▲ <u>시설 면적 4m²당 1명</u>	▲ <u>100명 미만으로 인원</u>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u>인원 제한 추가</u>	<u>제한</u>
목욕장업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u>시설 면적 8㎡당 1명</u> <u>인원 제한 강화</u>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평 생 친 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영화관 공연장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mark>다른 일행 간 띄워</mark> <u> 앉기 추가(칸막이 있는</u>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 <u>시설 면적 4m당 1명</u> <u>인원 제한 추가</u>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 <u>단체룸은 50%로 인원</u> <u>제한</u>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킨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u>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u> 원 제한 추가	▲ <u>수용인원의 1/3으로</u> 인원 제한 강화
이·미용업		전 세인 무기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시설 면적 8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시설 대중 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u>추가</u>	▲ 실내 전체, 실외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화축제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 회의에는 4m'당 1명 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u>30% 이내로 관중</u> 입장	▲ <u>10%</u>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u>밀집도</u>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평생친구

붙임2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지자체별로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 가능

78	FILAL LLAM		개소수		ul-
구분	대상 시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비고
	합 계	1,305,366	591,594	713,772	
2	증점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852,310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점, 제과점영업 등
잍	! 반관리시설	374,018	175,847	198,171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569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이 의무화되며, 2.5단계부터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됨

















붙임3 지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2020.11.29.(일) 12:00 기준)

<단계상향(24): 광역(7)+기초(17)> ※ 광역 ___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 계적용	12개	-	4개 (음성, 천안, 아산, 논산)	3개 (광주, 전북, 전남)	-	1개 (경남)	4개 (원주, 철원, 횡성, 춘천)	-
2단계 적용	12개	3개 (서울,인천, 경기)	1개 (제천)	4개 (순천,군산, 익산,전주)	-	3개 (창원,진주, 하동)	1개 (홍천)	-

	지역		단계상향일/지	단계격하일/지역				
구분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비고	날짜/지역	조치 단계	비고
1	수도권	서울	11.24.~12.31.(서울)	2		-	-	-
2		경기	<u>11.24.~12.7.(경기)</u>	2		-	-	-
3		인천1)	<u>11.24.~12.7.(인천)</u>	2		-	-	-
	4 5	세종	-	-		-	-	-
5		대전		-		-	-	-
6		충북	11.25.~12.8.(음성)	1.5				
ੇ ਨੇ	충청권		11.28.~12.14.(제천)	2		_	_	-
7		충남	11.5~별도명령시(천안,아산)	1.5		_	_	_
'			11.24.~11.30.(논산)					
8		광주	<u>11.19.~별도명령시</u>	1.5		-	-	-
		전북	<u>11.23.~별도명령시</u>	1.5				
9			11.28.~별도명령시(군산)	2				
9	호남권		11.30.~별도명령시(익산)	2		-	-	-
			11.30.~별도명령시(전주)	2				
		전남	11.24.~12.7.(전남)	1.5				
10			11.20.~별도명령시(순천)	2		-	-	-
11	경북권	대구	-	-		-	-	-
12	성독편	경북	-	-		-	-	-
13		부산2)	-	-		-	-	-
14		울산	-	-		-	-	-
	경남권	경남	11.29.~12.12.(창원)	2				
15	000		11.26.~12.9.(진주)	2		_	_	_
	13		11.21.~12.4.(하동) ³⁾	2				
			<u>11.26.~12.9.(경남)</u>	1.5				
		강원	11.10.~별도명령시(원주)	1.5				
16			11.19.~별도명령시(철원)	1.5				
			11.21.~12.4.(횡성)	1.5		-	-	-
			11.24.~12.7.(춘천)	1.5				
			12.1.~별도명령시(홍천)	2				
17	제주	제주	-	-		-	-	-

- 1) 인천: 11.23. 0시부터 1.5단계 → 24일 0시부터 2단계
- 2) 부산: 11.27. 0시부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실시
- 3) 하동(11.19.), 진주(11.25.), 창원(11.20.) 1.5단계 상향 후, 하동 21일부터, 진주 26일부터, 창원 29일부터 2단계 상향











평생친구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느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친구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잡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